

모금 헌장

하나,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의 목표와 기부금의 용도를 진실하게 밝히고 모금에 임합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지정성, 종합성, 대중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활동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법을 준수합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의 모금행위에 대해 모금대상이 되는 잠재적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거부감을 표시할 경우에는 즉시 모금활동을 중단합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 ① 아름다운재단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 ② 아름다운재단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
- ③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 ④ 기부자가 아름다운재단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했거나 기부금의 수혜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활동을 했을 경우
- ⑤ 기부금의 운영비가 기부금액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 ⑥ 기부의 대가로 아름다운재단의 사업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 ⑦ 기부금의 사업내용이 아름다운재단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여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 ⑧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 현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다섯,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 ①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 ②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 ③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 못되었을 경우

여섯, 특정 기부금의 수령 또는 거부는 아름다운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아름다운재단 사무국이 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기부자의 관련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은 모금 활동 시에 기부자 또는 잠재적기부자들에게 언제나 진실하고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에 대해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문의하거나 불만을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확하게 공지하고 문의와 불만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합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신상을 언제나 명확하게 밝히며, 그 직원에 대한 보상은 모금 실적에 근거한 성과급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급여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